

서울특별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

의안번호	792
------	-----

2023. 6. 28.

문화체육관광위원회

I. 심사경과

가. 발의일자 및 발의자 : 2023년 5월 30일, 황철규 의원(찬성자 49명)

나. 회부일자 : 2023년 6월 5일

다. 상정결과 : 【서울특별시의회 제319회 정례회】

- 제3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(2023.6.21.)상정,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 및 답변, 의결(수정안가결)

II. 제안설명의 요지(황철규 의원)

1. 제안이유

- 중앙정부 및 자치구 등과의 협력을 통한 관광산업 기반 여건 확립 필요
- 불법 관광산업으로 인한 관광객 피해 예방

2. 주요내용

- 시장의 책무조항으로 시장은 중앙정부, 자치구 등과 협력하여 올바른 관광산업을 확립하고 이에 필요한 관광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도록

함(신설 제4조제4항)

Ⅲ. 검토보고 요지(수석전문위원 주우철)

가. 개정안의 개요

- 동 개정안은 중앙정부, 자치구 등과 협력하여 올바른 관광산업을 확립하고 이에 필요한 관광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기 위해 발의 되었음.

나. 시장의 책무 신설(안 제4조의4항)

- 개정안은 시장이 중앙정부와 자치구 등과 협력하여 올바른 관광산업을 확립하고 필요한 관광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선언적 규정을 시장의 책무로 신설하고 있음.
- 현재도 “글로벌 TOP5 도시 서울 도약을 위한 서울관광 활성화 계획(2022~2026)” 을 수립하는 등 서울시는 정부 관광분야 정책기조에 대응한 시 세부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 중임.
- 또한 서울시는 지역 중심의 관광진흥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자치구 관광협의체를 구축하고 기초 단위에 민관협력의 관광생태계 활성화 차원에서 권역별, 자치구별 관광협의체 구축을 유도하는 등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음.
- 서울 도심관광협의체(종로, 중구, 용산, 성북, 서대문, 마포)를 우선적으로 활성화하고 있고 강남권, 동북권 등 권역별로 관광협의체도 신설하여 지원할 계획임.

- 이처럼 중앙정부와 자치구와의 협력을 통해 관광산업을 확립하고 관광 여건을 조성하도록 시장의 책무를 명문화하여 정책의 추진방향과 방법을 견고히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.
- 다만 ‘올바른 관광산업 확립’은 주관적인 개념으로 모호하고 자의적 해석이 가능함으로 중앙정부와 자치구 등과의 협력하는 것으로 수정할 것을 제안드립니다.

〈수정 제안〉

개 정 안	수 정 제 안
제4조(시장의 책무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 ④ <u>시장은 중앙정부 및 자치구 등과 협력하여 올바른 관광산업을 확립하고, 이에 필요한 관광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.</u>	제4조(시장의 책무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 ④ <u>시장은 관광산업 발전과 관광 여건 개선을 위해 필요한 경우 중앙정부, 자치구 등과 협력하여야 한다.</u>

IV. 질의 및 답변요지 : 「생략」

V. 심사결과 : 수정안가결(재적위원 9명, 참석위원 7명, 참석위원 전원찬성)

VI. 수정안의 요지

가. 수정이유

- 신설조항 내 ‘올바른 관광산업을 확립’ 한다는 개념이 모호하여 개인이 추구하는 가치에 따라 해석의 여지가 다양할 수 있어 중앙정부 및 자치구 등과의 협력 규정 신설 시 조항을 구체화시키고자 함.

나. 수정의 주요 내용

- 가. 시장은 관광산업 발전과 관광 여건 개선을 위해 필요한 경우 중앙정부, 자치구 등과 협력하도록 수정함 (안 제4조제4항).

VII. 소수의견 요지 : 「없음」

VIII. 기타 필요한 사항 : 「없음」

서울특별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인에 대한 수정안

서울특별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4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- ④ 시장은 관광산업 발전과 관광 여건 개선을 위해 필요한 경우 중앙정부, 자치구 등과 협력하여야 한다.

< 수정안 조문대비표 >

현행	개정안	수정안
<p>제4조(시장의 책무) ① ~ ③ (생략)</p> <p><신설></p>	<p>제4조(시장의 책무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</p> <p>④ <u>시장은 중앙정부 및 자치구 등과 협력하여 올바른 관광산업을 확립하고, 이에 필요한 관광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.</u></p>	<p>제4조(시장의 책무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</p> <p>④ <u>시장은 관광산업 발전과 관광 여건 개선을 위해 필요한 경우 중앙정부, 자치구 등과 협력하여야 한다.</u></p>

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④ 시장은 관광산업 발전과 관광 여건 개선을 위해 필요한 경우 중앙정부, 자치구 등과 협력하여야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<신·구조문대비표>

현 행	개 정 안
제4조(시장의 책무) ① ~ ③ (현행 과 같음) <u><신 설></u>	제4조(시장의 책무) ① ~ ③ (현행 과 같음) <u>④ 시장은 관광산업 발전과 관 광 여건 개선을 위해 필요한 경 우 중앙정부, 자치구 등과 협력 하여야 한다.</u>